|  |  |  |
| --- | --- | --- |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비화폐성 자산투자에 관한 기업소득세 정책문제의 통지**  재세〔2014〕116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국가세무국、지방세무국, 신강 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 기업인수합병 시장환경의 진일보 최적화에 관한 의견》（국발〔2014〕14호） 철저하게 실현하기 위해서，《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및 실시조례 유관규정에 의거, 기업소득세 정책과 연관된 비화폐성 자산투자 문제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한다.  1. 거주자기업(이하기업)은 비화폐성 자산의 대외투자로 확인된 비화폐성 자산의 양도 소득은 5년 이내에, 분기마다 균일하게 해당 연도에 납부 소득액에 계상하여,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2. 기업의 비화폐성 자산의 대외투자는 비화폐산 자산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평가 후 공정가액에서 과세표준가액을 공제 후의 잔액으로 계산된 비화폐성 자산의 양도소득을 확인해야 한다.  기업의 비화폐성 자산 대외투자는 투자협의가 발효되어야 하며 지분 등록수속을 밟을 때, 비화폐성 자산의 양도수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기업의 비화폐성 자산의 대외투자로 취득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은 비화폐성 자산의 원가를 과세기준으로 하며, 더불어, 매년 확인된 비화폐성 자산의 양도소득을 계상하여, 해마다 조정한다.  피투자기업에서 취득한 비화폐성 자산의 과세기준은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액 확정에 따라야 한다.  4. 기업은 대외투자 5년이내에 상술한 지분 또는 투자회수의 양도는 이연납세정책 시행을 중지해야 하며, 이연기간 내 미확인된 비화폐성 자산의 양도소득은 지분 또는 투자회수 양도 당해 년도의 기업소득세 정산 완납시, 한번에 계산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기업이 지분양도소득을 계산 시, 본 통지의 제3조 제1항규정에 따라 지분의 과세기준을 한차례 규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기업이 대외투자 5년이내에 말소될 경우, 이연납세정책 및 이연기간 내 미확인된 비화폐성 자산의 양도소득 시행을 중지해야 하며, 말소 당해년도의 기업소득세 정산 완납시, 한번에 계산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5. 본 통지에서 일컫는 비화폐성 자산은 현금, 은행예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및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투자 등 화폐성 자산 이외의 자산을 가리킨다.  본 통지에서 일컫는 비화폐성 자산투자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출자하여 신설한 거주자기업, 또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기존의 거주자 기업에 투자한 것에 한한다.  6. 기업에서 발생한 비화폐성 자산투자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인수합병의 기업소득세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통지》(재세〔2009〕59호)등 문건에 규정된 특수한 세무 처리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또한 특수한 세무처리 시행규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7. 본 통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통지 발표 전 미처리된 비화폐성 자산투자는 본 통지 시행에 맞춰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4년12월31일 |  | **财政部、国家税务总局**  **关于非货币性资产投资企业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  财税〔2014〕116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为贯彻落实《国务院关于进一步优化企业兼并重组市场环境的意见》（国发〔2014〕14号），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有关规定，现就非货币性资产投资涉及的企业所得税政策问题明确如下：  　　一、居民企业（以下简称企业）以非货币性资产对外投资确认的非货币性资产转让所得，可在不超过5年期限内，分期均匀计入相应年度的应纳税所得额，按规定计算缴纳企业所得税。  　　二、企业以非货币性资产对外投资，应对非货币性资产进行评估并按评估后的公允价值扣除计税基础后的余额，计算确认非货币性资产转让所得。  　　企业以非货币性资产对外投资，应于投资协议生效并办理股权登记手续时，确认非货币性资产转让收入的实现。  　　三、企业以非货币性资产对外投资而取得被投资企业的股权，应以非货币性资产的原计税成本为计税基础，加上每年确认的非货币性资产转让所得，逐年进行调整。  　　被投资企业取得非货币性资产的计税基础，应按非货币性资产的公允价值确定。  　　四、企业在对外投资5年内转让上述股权或投资收回的，应停止执行递延纳税政策，并就递延期内尚未确认的非货币性资产转让所得，在转让股权或投资收回当年的企业所得税年度汇算清缴时，一次性计算缴纳企业所得税；企业在计算股权转让所得时，可按本通知第三条第一款规定将股权的计税基础一次调整到位。  　　企业在对外投资5年内注销的，应停止执行递延纳税政策，并就递延期内尚未确认的非货币性资产转让所得，在注销当年的企业所得税年度汇算清缴时，一次性计算缴纳企业所得税。  　　五、本通知所称非货币性资产，是指现金、银行存款、应收账款、应收票据以及准备持有至到期的债券投资等货币性资产以外的资产。  　　本通知所称非货币性资产投资，限于以非货币性资产出资设立新的居民企业，或将非货币性资产注入现存的居民企业。  　　六、企业发生非货币性资产投资，符合《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重组业务企业所得税处理若干问题的通知》（财税〔2009〕59号）等文件规定的特殊性税务处理条件的，也可选择按特殊性税务处理规定执行。  　　七、本通知自2014年1月1日起执行。本通知发布前尚未处理的非货币性资产投资，符合本通知规定的可按本通知执行。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2014年12月31日 |